

-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3조④에 따라, 일부사유*를 제외하고 공결 인정 여부는 강의 담당 교원 재량에 따름

* 예비군훈련·병역판정검사

- ▣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학기당 공결 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 병역관계 및 취업자 공결 예외

- ▣ 공결 신청 전산화 시행(2025-1학기~)
- ※ 신청 후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신청 전 강의담당교원과 미리 상의하기를 권고합니다.
- ▣ ‘생리공결제’ 운영 (월 1회, 증빙불요)(시행 보류, 시행 시 재안내)
- ▣ 학기당 공결 상한선 설정(정규학기 1/3, 계절학기 4일)
-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제2조(공결사유 및 기간)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 본인 출산		· 20일
- 배우자 출산		· 5일
- 배우자 사망		·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5일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입원 및 치료(진단서 제출, 출석불가기간 명시)		4주 이내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증빙불요)		월 1일
○ 군 제대 복학시 개강 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 학과 주관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 (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11주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 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 메뉴 위치: [통합정보→학사행정→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 ① 공결신청 클릭
- ② 공결사유 선택 및 공결기간 설정
- ③ 증빙자료 업로드 (생리공결 외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증빙자료 다음 페이지 참조)
- ④ 공결 강좌 선택 후 신청, 최종 승인여부 확인

학생신청정보

학번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성별	- - / /	국적	한국	과정구분/소속분류	학사 대학
대학(원)		학과(부)		전공	
학적상태/학년(자)	재학 2	취득학점/평균점수	66 4.04	이수한기(편입인정)	3 (0)
입학구분/입학일자	신입 2023-03-02	휴대폰번호		이메일	

공결신청내역

* 신청기간 : 2024-12-26 00:00 ~ 2025-02-28 23:59

공결신청

신청취소

역류

년도	학기	승인상태	신청일자	반영 여부	공결사유	공결기간	강좌정보	수업(보강)	증빙 파일	비고
시작일자	종료일자	개설학과(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자	교시	일자	교시		

공결신청

X

신청년도/학기		신청일자	
학번/성명		소속학과(부)	
공결사유	선택	공결기간	202 ~ 202
증빙자료		비고	

□	강좌정보			수업		보강		담당 교수명	비고
	개설학과(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자	교시	일자	교시		

신청

닫기

공결신청내역

* 신청기간 : 2024-12-26 00:00 ~ 2025-02-28 23:59

공결신청

신청취소

역류

년도	학기	승인상태	신청일자	반영 여부	공결사유	공결기간	강좌정보	수업(보강)	증빙 파일	비고
시작일자	종료일자	개설학과(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자	교시	일자	교시		

승인완료

승인완료

순서	구분	소속	성명	처리상태	처리일시
2	담당교수			진행	
1	학생			신청	2025-01-22 10:56:56

총건수 : 2

변경사유

학사팀에서 안내하고 있는 일반적인 공결 사유 증빙서류이며, 담당 교원에 따라 인정 증빙서류 및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결 신청 전 강의 담당교원에게 제출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첨부서류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공결 인정 필수항목)

○ 첨부서류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첨부서류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입원 및 치료

○ 첨부서류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

▣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

- 학기 중 전역하여 선복학 후 개강 2주까지의 수업을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
- 첨부서류: 전역예정증명서

▣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 기관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스태프, 기자 등)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별도 서류 및 공결 신청 필요 없음(자동처리)

▣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가. 취업자 출석인정원(홈페이지) 작성 및 아래 증빙자료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결재, 학과 원본 보관

나.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 시 사본 첨부→ 담당교수 승인/반려

○ 취업자: 취업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1인 창(사)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첨부서류

- 행사참가 확인서 혹은 공결 협조문